

## 국립농산물검사소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 협조

96년 1월 1일부터 농산가공품에 원산지표시 의무화

### 1. 농산가공품 원산지 대상품목

- 과자류 : 챈류
- 유가공품 : 우유류, 저지방우유류, 유당분해우유류
- 통·병조림 : 농산물 통·병조림(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, 감귤, 살구, 매실, 자두, 참다래, 토마토, 딸기 또는 밤을 원료로 사용한 것)
- 수산물 통·병조림(고등어, 전갱이, 삼치, 정어리, 꽁치, 다행이, 연어 또는 패류를 원료로 사용한 것)
- 묵류 : 묵류 중 포장된 것
- 식용유지 : 참기름, 들기름
- 다류 : 침출차(녹차, 홍차, 우롱차, 보리차, 결명자차), 추출차(칡차, 구기자차, 당귀차, 두충차, 오가피차, 오미자차, 영지차, 생강차), 분말차(땅콩차, 올무차), 과실차(유자차)
- 청량음료 : 과실, 채소류 음료(사과, 배, 복숭아, 포도, 감귤류, 살구, 매실, 자두, 참다래, 토마토 또는 딸기를 원료로 사용한 것)
- 인삼제품 : 백삼, 홍삼, 태극삼, 농축인삼류, 인삼분말, 인삼차류, 당침인삼
- 절임식품 : 절임류(마늘절임류 또는 양파절임류 중 포장된 것)
- 기타 단순가공식품 : 땅콩 가공품, 견과류 가공품, 과실 채소류 가공품(고춧가루 포함), 단순가공식품, 곡물가공품(쌀, 찹쌀, 보리, 팥, 녹두) 특용 기호가공품, 조미어포류, 육포류

### 2. 농산가공품 원산지표시 방법

농산가공품은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, 배합비율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가 있는 경우는 그 원료 하나만 원산지를 표시하고, 배합비율의 50%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2가지 원료의 원산지와 그 배합비율을 표시한다.



▲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50% 이상인 경우는 그 원료 하나만 원산지 표시를 한다.

○ 표시위치 : 식품위생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중 “원료명 및 함량”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한다(식품위생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품목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표시 한다).

○ 활자의 크기 : 원료명 및 함량표시란의 활자는 7.5포인트(2.65mm) 이상의 크기로 표시한다. 다만, 용기, 포장의 표면적이 150cm<sup>2</sup> 이하인 식품의 경우에는 7.5포인트(2.65mm) 미만으로 표시할 수 있다.

○ 색깔 : 활자의 색깔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다.

○ 표시변경 : 가공품 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원료의 원산지별 배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 종전의 원산지별 원료함량에 대하여 그 증감범위가 20% 이내일 때에는 이미 종전의 원료 배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는 재고량이 모두 사용될 때까지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.

○ 포장 전면크기 : 캔이나 병으로 된 물품은 포장을 펼친 상태에서 포장 전체면적의 반을 포장전면 크기로 함.

○ 즉, 캔이나 병으로 된 물품의 포장전면 크기는 포장둘레 전체길이의 1/2×높이로 보면, 포장둘레의 위, 아래 길이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긴 쪽을 포장둘레 전체길이로 함.



▲ 캔이나 병으로 된 물품은 포장을 펼친 상태에서 포장 전체면적의 반을 포장전면 크기로 한다.